

肉鷄流通의 現況과 問題點 및 改善方案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파이프라인을
杜絕시키려면 유통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유통주체는 만들어 놓아야
한다.



尹 孝 穎
(建國大學校 奉產大學 教授)

1. 서 론

육계업의 발전을 계육의 유통량을 증대시키는 과정이라 정의한다면 유통량의 증대 또는 시장규모의 확대가 육계업 발전의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이를테면 생산행위를 경제발전의 문이라 한다면 유통행위는 그 문을 여는 열쇠에 비유할 수 있다.

이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유통의 근대화 없이 생산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파이프 라인(pipe line)인 것이며 파이프라인이 적합하지 않거나 애로가 발생했을 경우 생산물의 帶貨현상이라든지 가격 파동이 야기된다.

그러므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알맞는 파이프 라인의 설치가 생산물의 흐름을 증대시키고 가격안정 및 수요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육계유통에 있어서 생산

과 소비를 연결하는 파이프 라인의 설치가 적합하여 유통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알맞는 파이프 라인이 설치되어 원활한 유통으로 지속적인 육계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생산자들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論稿에서는 육계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 있는 파이프 라인에 어떠한 애로가 있으며 어떠한 크기의 파이프 라인이 연결되어야 육계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언급코자 한다.

2. 육계유통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육계산업은 1965년 이후 생산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하여 왔으나 유통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前近代性을 탈피하지 못한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아직도 유통과정에는 많은 결함이 개재되고 있다.

특히 계육은 위생적인 유통시설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위생적인 유통시설과 비효율적인 유통방법이 지배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유통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이리하여 정부는 위생적이며 유통의 근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1945년 12월 26일 법률 제2738호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개정 공포하고 1975년 9월 25일 동법 제2조 2항에 의하여 獸畜의 적용지역이 농수산부 고시 제2698호로 서울, 부산, 수원, 성남, 대전, 광주, 대구 등 7개 도시를 同法의 일차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육계의 대소비자인 同 지역은 종래의 유통방법에 일대 변혁을 초래케 했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시책은 전근대적인 유통시설과 유통방법을 현대적인 유통시설 및 유통구조로 대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데 목적을 두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유통과정에 혼란을 야기시켜 생산자수취가격의 하락과 소비자가격의 양등을 초래하여 本法이 有保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유통효율의 증대방안은 생산된 육계를 적정가격 수준으로 최종소비자의 수요변화에 적응시키는 한편 최소의 비용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생산농가에 유리한 수취가격을 보장하여 증산을 위한 유인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육계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도로 경감시키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시도한 육계 유통개선의 방안은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지 않는데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시켰다. 반면 정부가 同法 시행후 제기된 문제점을 감안하여 해결방안을 사전에 모색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육계 유통의 합리화가 이루어져 건전한 유통의 기반위에서 육계의

생산증가를 위한 유인을 주었을 것이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육계유통에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시켰던가를 생산자, 소비자 중간상인의 측면에서 조사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여 봄으로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먼저 생산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법 시행후 시장내의 도산매상(닭전)에서 生鷄의 계류 및 도제를 단속할 때 농가에서 27.5%의 생계를 구입하는 수집상과 23.1%를 매입하는 도산매상 23.4%의 생계를 매입하는 위탁상들의 83.1%가 농가에서의 생계를 구입하지 않으므로 출하 일령이 넘는 생계가 滯貨되고 이로 인하여 생산자의 판매가격은 폭락하였고 반면 출하일령이 지나 육계에 투입되는 비용의 가중으로 생산비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육계를 판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同法 시행후의 육계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파이프라인이 사절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유통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중요시되어야 하는 점은 유통을 담당하는 인적 기관은 제거 또는 배제할 수 있어도 그가 담당하는 유통기능은 누군가에 의하여 계속 수행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육계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주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던 도산매상(닭전)을 제거시켰으면서도 이들이 담당하는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유통주체를 만들어놓지 못했으므로 육계유통에 혼란을 빚어 내었으며 이런 문제를 법시행 이전에 고려치 않았던 것이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가정 소비자들은 수천년간 답습하여온 소비자의 관습 즉 시장내의 도산매상에서 계류되고 있는 생계의 형태와 색깔, 무게 등을

고려하여 직접 그 장소에서 자기 기호에 맞는 닭을 선택하여 도제하여 아직도 체온이 있는 도제물을 단시간내 가정에 운반하여 요리하는 관습을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기점으로 소비자가 생계의 외형 색깔, 크기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도제장에서 도제하여 냉동 또는 냉장된 생태로 유통을 일시에 변형시키므로서 그 도제품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특히 냉동된 닭을 삶아 하므로서 일반 가정에서의 육계 소비는 크게 감소되지 않을 수 없었다. 擬言하면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일반 가정 소비자의 기호와 관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데 커다란 오진을 범한 것이다.

이리하여 생계유통을 강력히 단속할 때는 소비자는 암거래시장에서 높은 암시장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과거의 관습대로 육계를 구입하였다.

또한 중간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육계유통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파이프 라인의 역할을 담당한 유통주체가 도산매상과 수집상 및 위탁상이다. 이들은 고래로 소비자의 선호와 기호에 맞추어 시장내 비위생적이나마 계류장과 도제시설을 갖추고 육계의 도산매행위로 그들의 생업을 유지하여 왔다.

이들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이후 도제장에서 도제품을 취급하는 상인수가 29%에 불과하였던 것은 소비자가 기히 도제된 닭을 구입하기를 싫어하므로 거래량이 극히 적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나 그에 앞서 도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것이 도제품판매를 하지 않는 주된 원인은 도제품만을 취급할 때 그들의 거래적인 유통방법보다 상업이윤(순마—진)이 극히 적다는 예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고정자본 특히 도제시설에 투자한 액수는 비교적 크며 이러한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생계유통을 단속할 때도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력히 단속할 때는 상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단속이 완화될 때 불법 암시장을 형성하여 암시장가격으로 단골에게 거래하여 왔으며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러한 비합리적 유통이 되풀이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도제장의 도제능력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1일 평균 닭수요량은 8~10만수이나 실제로 제도제장의 1일 도제능력은 3~4만수에 불과하다는데 커나란 문제점이 있다. 적어도 본법시행이 전 도제장의 도제능력만은 충분히 확보했어야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도제장의 도제능력마저 부족한 상태에서 본법을 시행했다는데 무리가 오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도제장의 시설능력 뿐만 아니라 도제처리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시장내 도제장에서 재래적인 도제과정보다 위생적인 도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도제된 닭도 도산매상에서 도제한 것보다 상품가치가 낮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 전체수요량에 60%에 해당하는 대량수요자(음식점)의 수요기간이 6~8시인데 실제 도제품의 출하는 9시 이후가 되므로 수요와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이후 축산물 유통에는 특정지역(부산 전주 제주 대구)을 제외한 여러 지역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법시행이 유보되었으나 아직도 유통개선의 진전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3. 육계유통의 개선방안

위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되면서 세기되는 육계유통상의 여러가지 문제점

을 열거하였으나 육체유통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육체유통의 효율화와 신속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육체유통의 합리화를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이 목적하는 바 모든 육체는 수개의 대규모도계장에 집결되어 도계된 도계품이 경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소비자와 연결시켜 주는 여러 소매상이 현재 소매상이 담당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계장의 신설 및 시설확장과 이들 도계장이 적정수요시간에 공급을 할 수 있고 도계장에 집결된 생계를 지체없이 단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계장의 신설은 생산자들(대규모 육체생산자)과 현 도산매상들에 한정시키되 이들에 대해서는 사료수입을 통해 적립된 축산진흥기금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기존 도계장의 시설확장에도 과감한 축산진흥기금이 용자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파이프 라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통주체도 현재의 군소 도산매상과 위탁판매상들을 흡수시키고 그들에 대한 자금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된 육체를 소비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유통주체의 형성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전통적인 기호와 선호의 문제는 이미 도계된 상태로 대량수요자에게 유통되는 문제가 전체 소비량의 60%에 해당되고 나머지 40%가 일반가정소비 이므로 이들이 도계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 가정소비자들은 도계품이 믿을 수

없고 냉동되었기 때문에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부들이 78%가 되므로 도계품 유통을 위해서는 일반 가정소비자들이 도계장에서 도계되는 과정을 재래적인 도계 과정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계품이 어이 죽거나 병든 털이 아니라는 것과 냉동 냉장된 털을 요리 시 잘 처리하면 맛에는 지장이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도계장에서는 도계하는 과정이 위생적이며 법에 규정된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어 상품의 가치가 있도록 노력 해야할 것이이며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도계품의 가격을 가능한 한 낮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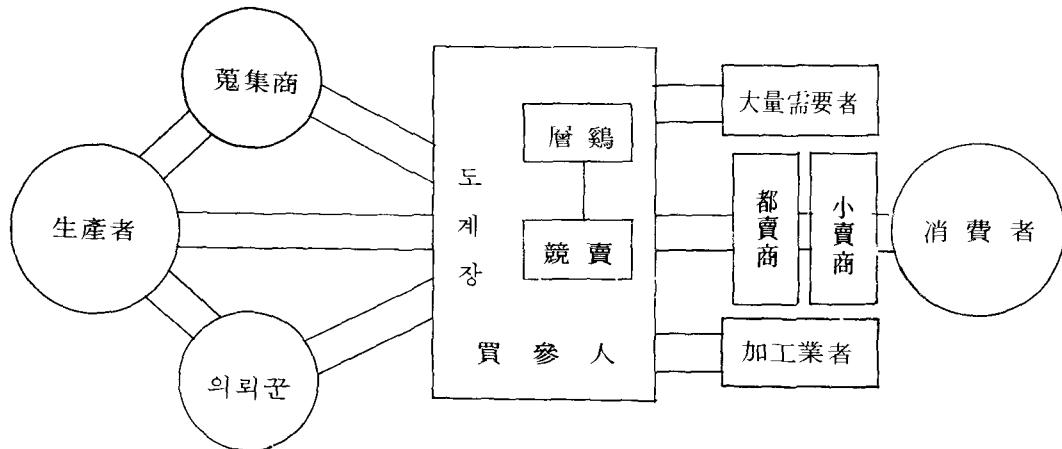
특히 육체 구입자의 교육정도가 타식품 구입자들 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내 산재하고 있는 도산매상이 그들의 불법적인 유통행위를 청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파이프 라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있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이상 열거한 유통내용을 도시하면 다음 도표와 같이 생산된 육체는 도계장으로 집결되어 여기서 도계되어 경영과정을 통하여 가격이 형성되고 買參人은 대량수요자도 대거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므로서 유통 마-진은 대체적으로 줄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통구조의 변화는 일정기간을 거쳐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대책이 마련 되었을 때 시행해야 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이러한 유통개선방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圖表 1 未來 肉鷄의 流通經路



4. 결 론

이상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육계유통의 현황과 문제점 및 유통개선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육계의 생산증대는 기술적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지만 그指續性과 소득의 크기는 유통시스템에 의하여 판정되므로 육계유통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유통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시대의 유통정책이란 그 사회경제의 발전단계와 생산 및 소비구조에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므로 유통정책은 통제(규제) 정책이기 이전에 조성촉진정책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유통정책은 육계유통 (Infrastructure)의 개선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현재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도계를 하여온 도산매상을 불법으로 규정

하여 제거하더라도 이들이 육계유통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므로 이들이 담당하던 중요한 유통기능을 누군가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끝으로 이와 같은 유통합리화방안의 실현은 정부만이 이를 수는 없다. 생산자 소비자 상인등 모든 유통주체의 협력을 통하여야만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유통상의 문제점 해결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시간을 거치는 동안 유통환경의 개선이 병행하여야 하므로 정부는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을 수립하여 궁국에가서 앞에서 제시한 유통합리화의 방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현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 및 보완을 단행해야 것이다.

또다시 육계유통에 있어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오물처리법 시행으로 과거와 같이 육계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육계유통의 장기간의 대책을 강구하여주기를 바라는 바이다.